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축산차량 GPS 운영실태 집중단속 계획

1. 배경

- 국가정책조정회의(9.24) 후속 조치에 따른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따라 추석연휴 등에 따른 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 지자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축산차량에 대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운영실태 집중 점검단속

2. 개요

- 단속기간 : ‘15. 9. 26. ~ ‘15. 10.8
- 단속기관 :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경찰청(지자체 주관, 관계기관 협조)
 - 특히, 10개 고위험 지자체*는 관할 경찰청과 협조하여 자체 계획수립 및 특별 점검반 편성·운영을 통한 집중 점검
 - * (광주) 광산구, (전북) 부안군, (전남) 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영암군, 장흥군, 함평군, 순천시, 담양군
- 단속대상 : GPS 의무장착 축산차량(가금류 관련)
 -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및 퇴비 운반차량
 - 진료, 인공수정, 축산농가 컨설팅, 방역 및 기계수리를 위해 축산 관계시설인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제조업체,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계란집하장,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체에 출입하는 사업자의 소유 차량
 - * 단속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에 의거 단속

3. 단속내용

- GPS 장착 및 GPS 정상작동 여부 (미부착, 고장 등 미가동, 일시제거, 전원차단 등 중점 점검)
- 축산차량등록제 등록 여부(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 부착여부)

4. 행정사항

- 시도(시군)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지역별 단속계획 수립 시행
-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찰청은 축산차량에 대한 GPS 운영 실태 및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필요시 지자체 주관으로 합동 점검)
- 기관별 단속결과는 아래 서식에 따라 18:00까지 농식품부 AI 상황실(팩스 : 044-868-7253, 메일 : avianinfluenza@korea.kr)로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

| 구분 | 점검실적(횟수, 인원) | | | | | | | | | | 단속실적(건수) | | | |
|-----|--------------|----|-----------------|----|------|----|----------------|----|---|----|-----------|-------------|---------------|-----------|
| | 계 | | 거점소독소 (이동통제) | | 전통시장 | | 도축장 (닭, 오리) | | 기타 (사료업체, 부화장, 계란집하장, 퇴비공장 등) | | 고발 | | 과태료부과 | |
| | 횟수 | 인원 | 횟수 | 인원 | 횟수 | 인원 | 횟수 | 인원 | 횟수 | 인원 | 미등록 차량 | GPS 미장착등 | GPS정상 작동마중 | 교육 미이수 |
| 기관명 | 금일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기타 : ○○ 명시 요청

○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요령은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요령”에 따라 조치<별첨 3 참조>

| 항목 | 세부내역 | 조치 |
|-------------|--------------------------------------|-----------|
| 차량 미등록 | ▪ 주기적 방문차량 또는 그 밖의 등록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 | 고발 조치 |
| GPS 단말기 미장착 | ▪ 등록차량에 GPS 미장착, 전원OFF, 훼손제거 | |
| 단말기 고장 | ▪ GPS센터 미신고한 상태에서 차량운행 | 과태료 부과 |
| 전원장치 고장 | ▪ 단말기 자체 전원 고장 | |

- 벌금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적발 공무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관할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
- 과태료는 축산차량 등록 시·군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 통보

별첨 1. 확인서 서식

2. 축산차량등록제 및 GPS 운영관련 참고자료

3.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요령에 따른 조치(공문)

별첨 1 위반사항 확인서

확 인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차량번호 : 차량유형 :

상기인은 2015년 월 일 시경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축산차량 GPS 운영실태 단속반의 점검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이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으며, 동 내용이 틀림없
 음을 확인합니다.

〈위반사항〉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2 축산차량등록제 참고자료

1. 축산차량 등록제란?

✓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임.



2.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이란?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알추가)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축산관계시설: 가축사육시설(300㎡ 이상),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및 계란집하장, 비료제조장 등

3.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4. 장애시 조치요령

✓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시 『차량등록제 운영센터 : 1544-3925』에 즉시 신고한다."

✓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시 축산시설을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출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별첨 3 축산차량등록제 참고자료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요령 알림

1.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통제 및 질병확산 방지 등을 위해 “축산차량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과태료는 축산차량등록제에 따른 등록지에서 부과 (축산차량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적발시 등록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3. 벌금 부과를 위한 고발은 축산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적발 공무원이 관할 경찰서에 요청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시·군·구에 전파하여 벌금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위기대응센터장), 세종특별자치시장(산림축산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전광역시(농업유통과장), 충청북도지사(축산과장), 충청남도지사(축산과장), 전라남도지사(축산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축산경영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축정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전라북도지사(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축산진흥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경상남도지사(축산과장)

주무관 주무관 방역총괄과장 전결 02/14

협조자

시행 방역총괄과-754 접수
우 427-719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http://www.mifaff.go.kr

전화 044-201-2363 전송 044-868-0628 / ysc0415@mifaff.go.kr / 대한민국 공개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